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85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바,
- 나. 서울특별시의 소속 사업소로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 나. 재단의 사업으로 교통·생활정보 제공,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 해외방송과의 교류,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3조)
- 다. 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라. 임직원, 이사회 운영,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시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마. 임원은 대표이사과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하고,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함(안 제6조)
- 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함(안 제9조)
- 사. 시청자보호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아. 시장은 재단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재단은 시와 산하기관에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 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차. 시장과 재단은 2년마다 재단이 수행하는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안 제13조)
- 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안 제14조)
- 타. 조례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파. 조례의 시행 당시 교통방송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설립된 날 시에서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3조)
- 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방송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봄(안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2. 14. ~ 3. 6.) 결과: 별도 첨부
 - (2)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3.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4.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6.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협찬 등 수익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시청자 보호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
10. 정관의 변경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임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제10조(시청자위원회)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 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와 그 산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3조(사업의 독립성) 시장과 재단은 2년마다 재단이 수행하는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교통방송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제2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설립된 날 시에서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방송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p>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교통방송 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을 교통·생활정보로 제한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해 열려있는 방송의 개념으로 확장 - 재단설립 이후에는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과 소통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와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확장된 개념의 목적의 필요성 인정
<p>언론개혁 시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에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과 소통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와 문화예술 진흥 부분 명기 - 입법예고(안)은 교통방송 설립 당시의 목적이며 방송사업 허가 시, 제시한 방송사항으로 조례에 담을 법인 설립의 가치와 지향을 담기에는 협소한 구절로 판단, 수정 방향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과 소통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와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확장된 개념의 목적의 필요성 인정
<p>언론개혁 시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재단의 사업)에서 관계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조항들은 해당 법률 개정 시, 조례를 수시 개정해야하는 문제점 발생하므로 수정 필요 - 또한 재단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방송 관련 사업만을 명시하는 것은 향후 재단사업의 확장과 시민 참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 방송사업, 지원 사업, 교류사업 및 수익사업의 네 분야로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 구체적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재단사업 명시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방송 관련 사업만을 명시하는 것은 향후 재단의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시민 참여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지적사항 수용

<p>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교통방송 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의 재단 기본재산 조성재원에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추가 - 재단이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사의 양여가 필수적 사항이므로 이에 관련된 재산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법률검토 결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재산은 양여가 불가
<p>언론개혁 시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정관)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추가 - 시민 중심의 tbs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하는 주요 사항 중에 시민, 또는 시청자 참여의 기구와 운영에 관한 내용 반드시 포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p>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교통방송 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이사회)에 근로자이사 2인 추가와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 3인 포함 구성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이후 정원 300명 이상이므로 2명의 근로자이사를 두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현재 시점에서 재단의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이를 준수
<p>언론개혁 시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이사회)에 이사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 지위 부여 조항 포함 필요 - 공영방송에 관련된 법률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방송사의 사업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로만 명시되지 않고 이는 이사회의 당연한 직무로 봄. 따라서 tbs 이사회 또한 직무와 함께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역할 구체화

<p>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교통방송 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직원)에 ‘임명 또는 해임’을 ‘임면’으로 변경 -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되 표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p>언론개혁 시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재단 법인화 목적 중 하나인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을 위해 조례상 보장된 기구로 명시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 안 제11조(시청자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지급 가능 근거 마련
<p>언론개혁 시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서울시의 책무 근거 마련 - 조례 입법예고안에는 재단 법인의 의무와 서울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조항들은 자칫 tbs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서울시가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지원을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명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 안 제19조(사업의 독립성)에 관련 조항 신설하여 서울시와 재단이 2년 마다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함께 수립·이행하는 근거 마련
<p>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교통방송 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칙 제4조(고용승계)를 교통방송 소속 공무원(일반직, 일반임기제 등) 중 재단직원으로 전환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재단이 설립된 때에 임용하고, 동시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임용특례 규정으로 구체화 -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변화에 따른 위헌 논란과 고용갈등을 방지하고 순조로운 법인화 진행을 위하여 조례제정 시, 교통방송 소속 공무원의 고용승계 부분을 조문에 반드시 명문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 tbs의 재단법인화는 공공부문에서의 조직변경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체결 없이 포괄적 고용승계가 가능하며,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부칙 및 재단 정관 부칙에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자문 검토의견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임용특례 규정 구체화

<p>언론개혁 시민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권한과 재단법인의 의무에 관하여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 삭제 권고 - 기존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안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이미 적시되어 있는 서울시출자 법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권한은 삭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권한과 재단법인의 의무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되는 것이 적정
----------------------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재단 출연금(기본재산 및 운영비)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 조례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 조례안 제11조(출연금 교부) ①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 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가격기준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 연구용역 결과 및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계획(행정안전부 지방출연기관 설립 협의자료)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19~'2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19)	2차년도 ('20)	3차년도 ('21)	4차년도 ('22)	5차년도 ('23)	합계
총 계		493	439	445	451	457	2,285
세 출	○ 기본재산	60					60
	○ 방송시설투자	54	54	54	54	54	270
	○ 방송제작비	159	160	162	163	165	809
	○ 인건비	191	195	198	203	207	994
	○ 광고홍보비	17	17	18	18	18	88
	○ 기타경비	12	13	13	13	13	64

※ 소요인력은 총 448명으로 인건비는 정규직(357명)+계약직 작가(78명) 기준으로 작성. 프리랜서 13명에 대한 도급비용은 방송제작비에 포함

4. 재원조달 방안 : 市 출연금 + 자체수입(광고수입 등)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19)	2차년도 ('20)	3차년도 ('21)	4차년도 ('22)	5차년도 ('23)	합계
총 계		493	439	445	451	457	2,285
자체 수입	소계	70	76	147	150	153	596
	○ 라디오협찬광고	55	59	18	19	20	171
	○ 뉴미디어광고	8	9	10	11	12	50
	○ 케이블수신료	5	6	6	7	7	31
	○ TV광고 및 기타	2	2	3	3	4	14
	○ FM광고			110	110	110	330
市 출연금		423	363	298	301	304	1,689

※ '21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시, FM 상업광고 허가를 가정. 산출

5. 덧붙이는 의견

- 재단 전환시 예상되는 사업비는 기존 市 사업소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지방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함에 따라 재정운영 주체가 변동되는 사항으로 대규모로 추가적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은 아님
- 다만, 법인화에 따른 기능강화 및 서울시 공무원이 맡고 있던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증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의 직접고용에 따른 일정부분 처우개선 비용 등은 신설재단의 안정화, 고용안정 측면에서 일부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6. 작성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김정훈(02-2133-222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기본재산 : '18년 교통방송 세출예산(369억원)의 약 2개월분 반영

※ 기본재산 규모는 주요 서울특별시 산하 출연기관과 서울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연간예산 : 방송시설투자, 방송제작비, 인건비, 광고홍보비, 기타경비

- 방송시설 투자 : '19년 투자예산액 기준 향후 5년간 변동 없음으로 설정
- 방송제작비 : 신설재단 조기정착 등을 위해 '18년 예산대비 '19년 10% 상승, 이후 매년 실질인상률 1% 가정
- 인 건 비 : 기존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과 4대보험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며 매년 실질인상률 2% 가정
- 광고홍보비 : 광고유치를 위한 지출, 방송편성 기획 및 관리 비용, 매체 홍보비 등임

연도	항 목	내 역	예산금액 (억원)	산출기초
	총 계 ('19년~'23년)		2,285	
2019	재단설립 준비금	기본재산	60	
	재 단 운 영	방송시설 투자	54	▶ 송신소 유지관리 ▶ 방송장비 유지관리 ▶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 등
		방송 제작비	159	▶ tbs FM(95.1MHz), tbs eFM(101.3MHz), tbs TV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운영
		인건비	191	▶ 조 직 : 3실 5국 17부 ▶ 인 원 : 435명(정규직 357명, 비정규직 78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광고 홍보비	17	▶ 광고유치, 방송편성 기획 및 관리 비용 ▶ tbs 매체 홍보비용
		기타경비	12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계		433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 (억원)	산출기초
2020	재단 운영	방송시설 투자	54	▶ 송신소 유지관리 ▶ 방송장비 유지관리 ▶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 등
		방송 제작비	160	▶ tbs FM(95.1MHz), tbs eFM(101.3MHz), tbs TV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운영
		인건비	195	▶ 조 직 : 3실 5국 17부 ▶ 인 원 : 435명(정규직 357명, 비정규직 78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광고 홍보비	17	▶ 광고유치, 방송편성 기획 및 관리 비용 ▶ tbs 매체 홍보비용
		기타경비	13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계	439	
2021	재단 운영	방송시설 투자	54	▶ 송신소 유지관리 ▶ 방송장비 유지관리 ▶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 등
		방송 제작비	162	▶ tbs FM(95.1MHz), tbs eFM(101.3MHz), tbs TV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운영
		인건비	198	▶ 조 직 : 3실 5국 17부 ▶ 인 원 : 435명(정규직 357명, 비정규직 78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광고 홍보비	18	▶ 광고유치, 방송편성 기획 및 관리 비용 ▶ tbs 매체 홍보비용
		기타경비	13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계	445	

연도	항 목	내 역	예산금액 (억원)	산출기초
2022	재단 운영	방송시설 투자	54	▶ 송신소 유지관리 ▶ 방송장비 유지관리 ▶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 등
		방송 제작비	163	▶ tbs FM(95.1MHz), tbs eFM(101.3MHz), tbs TV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운영
		인건비	203	▶ 조 직 : 3실 5국 17부 ▶ 인 원 : 435명(정규직 357명, 비정규직 78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광고 홍보비	18	▶ 광고유치, 방송편성 기획 및 관리 비용 ▶ tbs 매체 홍보비용
		기타경비	13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계	451	
2023	재단 운영	방송시설 투자	54	▶ 송신소 유지관리 ▶ 방송장비 유지관리 ▶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 등
		방송 제작비	165	▶ tbs FM(95.1MHz), tbs eFM(101.3MHz), tbs TV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운영
		인건비	207	▶ 조 직 : 3실 5국 17부 ▶ 인 원 : 435명(정규직 357명, 비정규직 78명) ▶ 내 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광고 홍보비	18	▶ 광고유치, 방송편성 기획 및 관리 비용 ▶ tbs 매체 홍보비용
		기타경비	13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및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
		계	457	